

# 칸타빌 더 스위트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4.07.(금)]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안내

### 1.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예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으며,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일반 관람은 방문 기간 내 입장이 가능하며,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칸타빌더스위트.com>)으로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칸타빌 더 스위트는 COVID-19 확산 방지로 인하여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칸타빌더스위트.com>)을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 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건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800-6040)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 COVID-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을 경우

■ COVID-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내 대표번호(☎1800-60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4.01.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아파트로써,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3.04.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 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특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칸타빌더스위트.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일 기준은 향후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2023.04.01.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

약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및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당첨자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3.04.17.(월)	2023.04.18.(화)	2023.04.19.(수)	2023.04.25.(화)	2023.04.27.(목) ~05.03.(수)	2023.05.08.(월) ~05.1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건본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사업주체 건본주택(10:00 ~ 14: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칸타빌 더 스위트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증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3. 02. 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5738호(2023.04.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7개동 총 625세대  
[특별공급 323세대(일반[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62세대, 신혼부부 121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60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771대(아파트 765대, 근린생활시설 6대)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130	01	084.9739A	84A	84.9739	25.1798	110.1537	47.9854	158.1391	45.3689	262	26	26	52	7	26	137	125	11
		02	084.9855B	84B	84.9855	25.7665	110.7520	47.9919	158.7439	45.3751	181	18	18	36	5	18	95	86	10
		03	084.9908C	84C	84.9908	24.5159	109.5067	47.9949	157.5016	45.3780	16	2	1	3	-	1	7	9	1
		04	084.8686D	84D	84.8686	25.0522	109.9208	47.9259	157.8467	45.3127	154	16	15	30	4	15	80	74	5
		05	097.8439	97	97.8439	27.8504	125.6943	55.2531	180.9474	52.2405	6	-	1	-	1	-	2	4	3
		06	101.4436	101	101.4436	28.4076	129.8512	57.2860	187.1372	54.1624	6	-	1	-	1	-	2	4	3
	합 계											625	62	62	121	18	60	323	302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비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향후 준공 전·후시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 상(청약시) 주택형	084.9739A	084.9855B	084.9908C	084.8686D	097.8439	101.4436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7	10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 시		
										2023.12.11.	2024.05.10.	2024.11.11.	2025.05.12.	2025.10.10.	2026.02.10.			
84A	101동 1,2,3호 107동 1,2호	90	1층	3	125,529,000	309,471,000	-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2층	3	125,529,000	316,471,000	-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3층	3	125,529,000	323,471,000	-	449,0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3층(T)	2	125,529,000	356,471,000	-	482,0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4층	5	125,529,000	330,471,000	-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5-9층	25	125,529,000	337,471,000	-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0-14층	25	125,529,000	344,471,000	-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15~차상층	19	125,529,000	349,471,000	-	475,0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최상층	5	125,529,000	508,471,000	-	634,0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90,200,000		
	102동 6호 103동 5호 104동 1,2,3호 105동 1,2,3호 106동 6호	172	1층	6	125,529,000	313,471,000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층	8	125,529,000	321,471,000	-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3층	8	125,529,000	328,471,000	-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3층(T)	1	125,529,000	360,471,000	-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4층	9	125,529,000	335,471,000	-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5-9층	45	125,529,000	342,471,000	-	468,0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10-14층	45	125,529,000	349,471,000	-	475,0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15~차상층	41	125,529,000	353,471,000	-	479,0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최상층	9	125,529,000	512,471,000	-	638,0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84B	101동 4호 (15층 제외) 101동 5호 (10층 제외) 103동 3,4호 106동 4,5호 107동 3,4호	179	1층	10	125,546,000	305,454,000	-	431,0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층	10	125,546,000	312,454,000	-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3층	10	125,546,000	319,454,000	-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4층	10	125,546,000	326,454,000	-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5-9층	50	125,546,000	334,454,000	-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10-14층	45	125,546,000	341,454,000	-	467,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15~차상층	36	125,546,000	345,454,000	-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41,300,000	
	최상층	8	125,546,000	505,454,000	-	631,0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101동 5호	1	10층	1	125,546,000	494,454,000	-	620,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86,000,000	
	101동 4호	1	15층	1	125,546,000	500,454,000	-	626,0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7,800,000	
84C	101동 6호	16	2층	1	125,554,000	309,446,000	-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3층	1	125,554,000	316,446,000	-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4층	1	125,554,000	323,446,000	-	449,0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5-9층	5	125,554,000	330,446,000	-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10-14층	5	125,554,000	336,446,000	-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15~차상층	2	125,554,000	341,446,000	-	467,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최상층	1	125,554,000	496,446,000	-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84D	102동 1,2,3호 103동 1,2호 106동 1,2,3호	154	1층	5	125,374,000	306,626,000	-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2층	5	125,374,000	313,626,000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층	5	125,374,000	320,626,000	-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층(T)	3	125,374,000	352,626,000	-	478,0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4층	8	125,374,000	327,626,000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5-9층	40	125,374,000	334,626,000	-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10-14층	40	125,374,000	341,626,000	-	467,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15~차상층	40	125,374,000	345,626,000	-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41,300,000	
최상층	8	125,374,000	504,626,000	-	630,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89,000,000				

97	107동 1,2호	4	1층	2	144,542,000	363,143,636	36,314,364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2층	2	144,542,000	370,416,364	37,041,636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06동 6호	2	1층	1	144,542,000	368,598,182	36,859,818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층	1	144,542,000	375,870,909	37,587,091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01	106동 1,2,3호	6	1층	3	149,860,000	372,854,545	37,285,455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층	3	149,860,000	380,127,273	38,012,727	568,0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인지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로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체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7	101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2	-	2	-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3	3	1	2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1	3	-	-	9	
	중소기업 근로자	3	2	-	2	-	-	7	
	장애인	인천광역시	7	4	-	4	-	-	15
		경기도	4	3	-	2	-	-	9
서울특별시		3	2	-	1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50%)	13	9	1	8	1	1	33	
	경기도, 서울특별시(50%)	13	9	-	7	-	-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36	3	30	-	-	1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5	-	4	1	1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26	18	1	15	-	-	60	
<b>합 계</b>		<b>137</b>	<b>95</b>	<b>7</b>	<b>80</b>	<b>2</b>	<b>2</b>	<b>323</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ul> </li> </ul>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자격 요건</b></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18호(2023.2.2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	-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2.2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2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기준)
2023.04.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정된 자
-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청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자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2023.2.28.)]에 따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 부동산(건물+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② 삭제
-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④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⑥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기준)
<b>2023.04.07.</b>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2.28.)]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② 삭제
-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④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⑥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충족)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 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40%) / 추첨제(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li>• 청약자 전원 추첨제(100%) 적용</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 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b>2023.04.17.(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 앱</li> </ul> </li> <li>•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3.04.18.(화)</b>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 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3.04.19.(수)</b> 09:00 ~ 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3.04.25.(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4.25.(화) ~ 05.0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4.2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 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 VI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제출 기간	제출방법 및 장소	비고
<b>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04.27.(목) ~ 05.03.(수).(7일간)</li> <li>※ 예비입주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방법 : 방문 접수</li> <li>•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li> </ul>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방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li> <li>• 당첨자의 자격검증서류는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특별공급 구비서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의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는 인터넷 청약('청약Home')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해외근우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이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전원)
	○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 인터넷 청약(청약Home)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출생연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 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강도장 날인(본주택에 비치)
	○		인강증명서, 인강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만 인정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주택	해당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소형·저가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당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 확인 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기타 무주택 확인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 입증 서류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재직증명서 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소득신고 미도래로 인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분주택에 비치)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자산 입증 서류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일반공급 입주자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주소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추가서류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및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Ⅶ

###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5.08.(월) ~05.10.(수)(3일간) 10:00~17:00	칸타빌 더 스위트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계약금 입금증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계약 시 비서류 일체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합니다.(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

청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추후 분양권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각종 통지를 종전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발송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서면으로 통지한 계약상 각종 통지가 반송된 경우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130-0060-487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1702호 홍길동 → 1011702홍길동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 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702호 홍길동 → '101-0702홍길동' / 101동 1702호 홍길동 → '101-1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정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정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대출 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해당 대납이자자는 입주시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변제함), 입

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사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시공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12.11.	입주지정일	
84A	12,450,000	1,245,000	1,245,000	9,960,000	
84B	11,290,000	1,129,000	1,129,000	9,032,000	
84C	12,520,000	1,252,000	1,252,000	10,016,000	
84D	11,770,000	1,177,000	1,177,000	9,416,000	
97	전체	15,250,000	1,525,000	12,200,000	
	거실 비확장	9,300,000	930,000	7,440,000	
101	전체	15,250,000	1,525,000	12,200,000	
	거실 비확장	7,500,000	750,000	6,000,000	

### ■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시공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일정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3.12.11.)	잔금(입주시)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시공금액	수협은행	1130-0060-488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10%	10%	8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702호 홍길동 → ‘101-0702홍길동’ / 101동 1702호 홍길동 → ‘101-1702홍길동’]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 및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위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인접한 발코니 미확장세대에는 결로방지단열재가 시공되나,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외부 창호의 사이즈, 개소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12.11.	입주시	
84A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선택2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84B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84C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84D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97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선택2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9,700,000	970,000	970,000	7,760,000	
101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침실의 일반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함)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2)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12.11.	입주시	
전타입	냉장고 + 김치냉장고 + 키큰장	LG전자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인덕션 (프리미엄 키킨의 경우 선택 불가)	LG전자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오븐레인지	삼성전자	400,000	40,000	40,000	320,000	

-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플러스옵션(※ “-” 표기는 선택불가 항목입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타입	84A	84B	84C	84D	97	101	
현관 고급형	현관 중문	1,900,000	1,500,000	1,5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현관 고급형	600,000	500,000	500,000	700,000	600,000	700,000	
	현관 패키지(현관 중문+현관 고급형)	2,300,000	1,800,000	1,800,000	2,400,000	2,300,000	2,400,000	
침실1	침실1 슬라이딩도어	700,000	700,000	700,000	600,000	700,000	600,000	
	침실1 드레스룸 고급형	1,300,000	1,600,000	1,6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욕실 고급형	스타일바스(공용/부부욕실)	5,4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주방 고급형(택1)	스타일키친	5,200,000	5,000,000	5,000,000	6,200,000	5,200,000	6,200,000	
	프리미엄키친(※84A 최상층 불가)	16,500,000	13,300,000	13,800,000	8,600,000	16,500,000	8,600,000	
벽체·조명 고급형	프리미엄키친 미선택 시	침실2,3 분리형	4,000,000	4,100,000	4,400,000	3,500,000	5,000,000	4,700,000
		침실2,3 통합형	4,100,000	4,200,000	4,6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5,1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침실2,3 공간특화형	4,700,000	4,100,000	5,100,000		5,700,00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침실2,3 분리형	3,400,000	4,100,000	4,400,000	3,500,000	4,400,000	4,700,000
		침실2,3 통합형	3,500,000	4,200,000	4,6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4,5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침실2,3 공간특화형	4,100,000	4,100,000	5,100,000		5,100,000	
유럽산 포세린타일 바닥	프리미엄키친 미선택 시	침실2,3 분리형	3,4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4,300,000	4,600,000
		침실2,3 통합형	3,400,000	3,300,000	3,4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4,3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침실2,3 공간특화형	3,600,000	3,500,000	3,600,000		4,500,00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침실2,3 분리형	3,500,000	3,200,000	3,300,000	3,500,000	4,400,000	4,600,000
		침실2,3 통합형	3,500,000	3,200,000	3,3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4,4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침실2,3 공간특화형	3,700,000	3,500,000	3,600,000		4,600,000	
전동플랩장	전동플랩장(프리미엄키친선택 시 가능)	4,400,000	6,600,000	6,600,000	6,600,000	4,400,000	6,600,000	
불박이장 (침실2,3)	침실2	침실2,3 분리형	1,000,000	1,300,000	1,300,000	1,500,000	1,000,000	1,500,000
		침실2,3 통합형	선택 불가(침실2,3 통합으로 침실3 불박이장만 선택 가능)					
	침실3	침실2,3 분리형	1,100,000	1,400,000	선택 불가 (침실3 대피공간 출입문 설치)	1,000,000	1,100,000	1,000,000
		침실2,3 통합형	1,100,000	1,4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1,100,000	선택 불가 (침실2,3 공간 분리)
공간특화(침실2,3)	침실2,3 공간특화	3,600,000	2,900,000	2,800,000	3,600,000			

- 타일별 옵션 세부내역이 상이하니 홈페이지([www.칸타빌더스위트.com](http://www.칸타빌더스위트.com))의 유상옵션 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고급형의 경우 현관중문, 현관고급형을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고, 현관패키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벽체마감 및 조명 고급형, 프리미엄 키친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우물천정 및 조명 등에 따라 옵션별 천정도가 상이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키친 선택 시 인덕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덕션 추가선택이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키친 옵션의 주방 우물천정 및 주방 천정 간접조명은 84A(최상층 포함), 84D(최상층 포함), 97, 101타입만 설치됩니다.
- 84B(최상층 포함), 84C(최상층 포함)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옵션의 아일랜드가 식탁통합형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옵션인 스타일 키친과 프리미엄 키친을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옵션인 스타일 바스는 가족욕실과 부부욕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침실2, 침실3의 공간옵션에 따라 벽체마감, 바닥, 가구(불박이장) 등의 설치 가능 유무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세라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팬트리)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면 디자인 아트월 판넬, 간접조명 등은 특화범위(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 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84D타입 최상층의 침실3 불박이장 선택 시 기준층과 설치위치가 상이하오니 유상옵션 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및 분양홈페이지 내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가구 선택 시 설치 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빌트인가전, 불박이가구류, 현관중문 등의 판매가격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위의 금액과 옵션 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가구 옵션, 마감 옵션, 조명 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옵션 내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일정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3.12.11.)	잔금(입주시)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수협은행	1130-0060-488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10%	10%	80%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1동 702호 홍길동 → ‘101-0702홍길동’ / 101동 1702호 홍길동 → 101-1702홍길동]
- 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X

###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6년 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기

타 택지개발 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합니다.)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작은도서관), 야외주민운동시설(1곳),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 ■ 통학구역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나,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중학교 내 원당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나,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경우 3학교군(인천광역시 서구) 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정 가능하나, 공동학교군의 배치는 불가합니다.
- 학생배정 계획은 교육부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계획은 사업지 인근의 공동주택 분양일정 및 경단지역 중 ·고등학교 신설 여부에 따라 학생배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학교배정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 유의사항(※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반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 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지연될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굴, 노조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별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점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앞 보도블록은 향후 인.허가 및 실 시공등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예치금을 납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표기된 사항(단위세대 내 제품의 종류,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시설물의 종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열거한 사항으로 실제 당 사업지와 무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기가 아니며, 계약자는 계약전 표기된 사항의 실제 설치 여부를 도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안내문에 표기된 사항(단위세대 내 제품의 종류,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시설물의 종류 등)중 향후 배포되는 안내문, 계약서 등에 명기사항이 서로 상충 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우선시 합니다.

##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에는 84A, 84B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타입의 경우 세대별 구조, 마감자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 84B형에 설치된 다락 및 옥상 테라스는 최상층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각 평형별 다락 및 옥상 테라스의 형태, 크기, 방향 등이 모두 다름으로 계약자는 계약전 다락방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CG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개방감 확보 및 구조의 반영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용 단위세대는 연출을 위해 스팟조명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해당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조도와 실제 시공시 조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에 설치된 난간 중 개폐형 난간의 경우 견본주택 비상탈출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사항으로 실제 시공시에는 개폐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는 소방법에 따른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시에는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실별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전반·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체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함.)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미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터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벽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도면과 견본주택 설치 내용이 다를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하여 본 시공을 진행하며, 견본주택과 다른 부분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일치화를 진행(관계법 또는 시공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함)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바닥 배수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크기 난간 높이 등 법규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설계관련 주요사항(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공통사항

- 본 공동주택은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및 실 시공등 구조/성능/상품개선(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 입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지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경관조명), 문주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지형 및 배치에 따라 일부 동은 외부에서만 부대시설에 접근 가능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 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복합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향후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과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타용도의 배관 및 배선들이 설치 또는 통과할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또는 사면의 노출범위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수목으로 인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일부에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방음벽으로 인하여 조망에 제한이 있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구조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옥탑 및 옥상조형물 등 일부 구조물은 PC 또는 DECK 등으로 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일조 환경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 수인한도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지배치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전동 최상층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며, 본 시공 과정에서 태양광 효율 향상을 위해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한 수리공사 혹은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및 공용부분은 건축 특화 설계에 맞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과정에서 공용부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관계법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분전반 등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은 다락이 설계되어 있으며, 최상층 기준층과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배치 및 조경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 식재 등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규격, 종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선, 기능,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인접 세대, 주변 대지레벨 및 옹벽 등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하부층 부대복리 시설 설치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DA 설치로 인하여 악취,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확인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규모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득한 사업장으로 녹색건축본인증시 인증항목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총 6개 배치될 예정입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단지 내 총14개소 설치되며 196대 보관 가능합니다.

### 3) 동별 유의사항

#### [101동]

- 일부 세대는 단지 주차장 차량 출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 최하층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최하층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상부 공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냉난방기 부설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북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동측 고산후로와 접한 곳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동측 고산후로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최하층 재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 일부 세대는 단지 주차장 차량 출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남서측과 북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동측 단지 내 지상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동측 고산후로와 접한 곳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서측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로 인하여 일부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최하층 재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 일부 세대는 단지 주차장 차량 출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남서측과 북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동측 고산후로와 접한 곳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조망에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최하층 재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남서측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로 인하여 일부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최상층에 일조권 제어시스템(엘리오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사후 관리를 위한 수리 공사 및 점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04동]

- 동 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북측에 위치한 유아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터로 인하여 일부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남측 원형지 보존지역과 아파트 부지 경계에 한식 당장이 설치되므로 정확한 위치는 도면층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동측에 주차장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 동 최하층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북측과 남측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및 커뮤니티, 피크닉 광장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최하층 재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최상층에 일조권 제어시스템(엘리오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사후 관리를 위한 수리 공사 및 점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06동]

- 동 최하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서측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과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남측 원형지 보존지역과 아파트 부지 경계에 한식 당장이 설치되므로 정확한 위치는 도면층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서측에 만수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분 고저차 부분 옹벽이 설치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최하층 제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세대는 발코니 세대로 거실 베란다 전면에 별도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 최상층에 공청/위성 안테나,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마감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7동]

- 동 최하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서측에 만수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분 고저차 부분 옹벽이 설치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최하층 제연DA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세대는 발코니 세대로 거실 베란다 전면에 별도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 4) 주동 공용시설 및 입면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울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부는 외벽 일부부는 석재 및 도장마감 되며, 필로티 내부 등 일부부는 뽕칠마감 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 및 전기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단지 내 조명,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입면에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를 위한 후드캡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입면에 우수, 배수 등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 훼손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입면의 색채계획은 향후 최신 트렌드 및 시공사 특화에 따라 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시설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시설의 용도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주차시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편의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고,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충전소는 관련 법규에 맞춰 일반 7대, 급속 2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6) 기타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향후 공간 개선 및 시공사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문주,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문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탑 환기(탈취기) 및 실외기등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진동, 소음, 냄새,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쓰레기 집적장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FITNESS,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은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단위세대

- 본 공동주택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경우 발코니 배수 배관 노출로 인하여 안방 및 기타장소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정 속 설비요소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세라믹 타일 나누기(줄눈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후드, 욕실 환풍기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하며, 그로인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제조업체,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의 경우 평형별 형태에 따른 설치 여건에 따라 그 형태 및 설치방식 또는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시공방식 및 자재의 특성에 따라 이질재와 만나는 면의 시공방식, 모서리 마감의 마감방식, 줄눈의 위치, 줄눈의 마감 등이 서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 등을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감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류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 설치 위치는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며, 미건립세대의 경우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전기 전원은 단상 220V로 공급됩니다.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정고 포함)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정)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인접세대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비확장 세대에게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인접세대가 확장시에는 비확장세대에 추가로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정 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정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정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고 인접세대에 발코니확장세대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안전한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벽으로 구획이 되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해세대 발코니에 단열과 조적벽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의 실외기실은 외부 노출형으로 설치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 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창호의 위치 및 방향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유상옵션 설치 여부에 따라 가스배관 연결을 위해 가스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옵션인 전기 익던선 설치시에는 가스관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분배관까지만 시공됩니다.
- 욕실 장 하부 지지를 위한 턱은 시공성,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그 사이즈 및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싱크볼 및 수전 유상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엔지니어드스톤 뒤턱 시공 여부가 상이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정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 또는 사용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욕실 점검구 또는 다용도실 등으로 위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 또는 사용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면한 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하므로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층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 배관이 세대내 일부실 천정속에 설치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과 인접한 계단실 또는 EV를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 등을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 설치,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정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의 음식물조리 및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을 준수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저해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의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의 경우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정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정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정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 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 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 천정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천정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샤키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고 인접세대에 발코니확장세대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안전한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벽으로 구획이 되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해세대 발코니에 단열과

조적벽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창호난간의 보강 및 형태가 상이하여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경우 설치하는 전자제품의 크기 및 사양에 따라 창호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은 층별, 주택유형별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시 미설치)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의 경우 피난구의 방향, 주변 시설물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직접 피난 또는 완강기 등으로 피난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8) 단지여건

- 본 단지는 동측으로 20미터 도로, 남측으로 17미터 도로, 북측으로 10미터 도로가 위치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 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집적장 및 근린생활시 설(실외기 등),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주동 옥탑에는 점검용 계단,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또는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 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또는 중계기 등의 설치 위치는 해당업체의 의견 또는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 하여 설치하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및 조명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 시설조명과 상가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복합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향후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과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타용도의 배관 및 배선들이 설치 또는 통과할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동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호수별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조경, 동현관, 필로티, 난간,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원인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및 포장은 단지의 전체적인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결과에 따라 위치와 수량, 재료,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는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는 식재,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타 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원지형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자 측에서 관리 및 보존의무가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 IX 기타 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p>1. 공동주택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차 : 에이치엔개발 3. 대 시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방음등급 차등등급</td><td>★★★★</td></tr> <tr><td>2. 방음등급 차등등급</td><td>★★</td></tr> <tr><td>3. 세대 간 방음벽의 투음률</td><td>★★</td></tr> <tr><td>4. 골조소음(구조) 침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상용 코베루 소용</td><td>★★</td></tr> </table> <p>나. 구호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법성</td><td>★★</td></tr> <tr><td>3. 주민참여형 적용부분</td><td>★</td></tr> <tr><td>4. 주민참여형 적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파도한 지형개발 지양</td><td>-</td></tr> <tr><td>3. 토양수 오염예방 지양</td><td>★★★★</td></tr> <tr><td>4. 방음벽 건설형의 대체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사용</td><td>★</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용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조도등 조도률 위한 친환경적 사용 관리</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제품(PPG)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적량 대체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td><td>★★★★</td></tr> <tr><td>16.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td><td>★★</td></tr> <tr><td>17.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td><td>★★</td></tr> <tr><td>18.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td><td>★★★★</td></tr> <tr><td>19. 친환경 건축자재</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20. 환경친화적 건축자재</td><td>★★★★</td></tr> <tr><td>21.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2.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3.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4.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5.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6.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27. 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성능등급</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td><td>★★★★</td></tr> <tr><td>2. 방음벽의 친환경성</td><td>★★★★</td></tr> <tr><td>3. 자재의 친환경성 및 자재가도요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 관련 등급</td><td>★★★★</td></tr> <tr><td>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예방책</td><td>★★★★</td></tr> <tr><td>7. 시공시 방음벽 적용</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항목</td><td>★★★★</td></tr> <tr><td>9.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td><td>★</td></tr> <tr><td>10. 생활환경 관련 등급</td><td>★</td></tr> <tr><td>11.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2.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3.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4.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5.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6.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7.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8.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r><td>19.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td><td>★</td></tr> </table> </div>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방음등급 차등등급	★★★★	2. 방음등급 차등등급	★★	3. 세대 간 방음벽의 투음률	★★	4. 골조소음(구조) 침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용 코베루 소용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주민참여형 적용부분	★	4. 주민참여형 적용부분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파도한 지형개발 지양	-	3. 토양수 오염예방 지양	★★★★	4. 방음벽 건설형의 대체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사용	★	8. 저탄소 에너지용 기술의 적용	★★	9. 조도등 조도률 위한 친환경적 사용 관리	★★	10. 환경친화적 제품(PPG)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적량 대체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6.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7.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8.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9. 친환경 건축자재	★★	성능등급	성능등급	20.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	21. 자재의 친환경성	★★★★	22. 자재의 친환경성	★★★★	23. 자재의 친환경성	★★★★	24. 자재의 친환경성	★★★★	25. 자재의 친환경성	★★	26. 자재의 친환경성	★★	27. 자재의 친환경성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	★★★★	2. 방음벽의 친환경성	★★★★	3. 자재의 친환경성 및 자재가도요의 적합성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	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	★★★★	6.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예방책	★★★★	7. 시공시 방음벽 적용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항목	★★★★	9.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	★	10.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1.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2.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3.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4.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5.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6.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7.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8.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9.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div style="text-align: center;"> <h4>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4> <p>■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 제2호, 3. 24.</p>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건축물 개요</th><th>인증 개요</th></tr> <tr><td>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td><td>인증번호 : G-SEE-P-2023-0173-9</td></tr> <tr><td>건축주 : 에이치엔개발</td><td>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td></tr> <tr><td>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td><td>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td></tr> <tr><td>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td><td>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td></tr> </table> <p>총 수 : 지하 4층, 지상 20층 연 면 적 : 99,955.0883㎡ 건축물별 주택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남양건축사사무소</p> <p>인증 등급 : 우수(그린등급) 인증기관 : 녹색건축 인증기관(한국환경건축연구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P-2023-0173-9	건축주 : 에이치엔개발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시) 제20조 제3항 제2호, 3. 24.</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건축물 개요</th><th>인증 개요</th></tr> <tr><td>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td><td>인증번호 : 23-아-제1-1-0024</td></tr> <tr><td>건축주명 : 에이치엔개발</td><td>평가자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td></tr> <tr><td>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td><td>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td></tr> <tr><td>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가정)</td><td>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td></tr> <tr><td>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td><td>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td></tr> </table> <p>인증 등급 : 우수(그린등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시) 제20조 제3항 제2호, 3. 24.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3-아-제1-1-0024	건축주명 : 에이치엔개발	평가자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	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가정)	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방음등급 차등등급	★★★★																																																																																																																																															
2. 방음등급 차등등급	★★																																																																																																																																															
3. 세대 간 방음벽의 투음률	★★																																																																																																																																															
4. 골조소음(구조) 침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용 코베루 소용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주민참여형 적용부분	★																																																																																																																																															
4. 주민참여형 적용부분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파도한 지형개발 지양	-																																																																																																																																															
3. 토양수 오염예방 지양	★★★★																																																																																																																																															
4. 방음벽 건설형의 대체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사용	★																																																																																																																																															
8. 저탄소 에너지용 기술의 적용	★★																																																																																																																																															
9. 조도등 조도률 위한 친환경적 사용 관리	★★																																																																																																																																															
10. 환경친화적 제품(PPG)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적량 대체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6.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7.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8.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률 실적	★★★★																																																																																																																																															
19. 친환경 건축자재	★★																																																																																																																																															
성능등급	성능등급																																																																																																																																															
20.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																																																																																																																																															
21. 자재의 친환경성	★★★★																																																																																																																																															
22. 자재의 친환경성	★★★★																																																																																																																																															
23. 자재의 친환경성	★★★★																																																																																																																																															
24. 자재의 친환경성	★★★★																																																																																																																																															
25. 자재의 친환경성	★★																																																																																																																																															
26. 자재의 친환경성	★★																																																																																																																																															
27. 자재의 친환경성	★★																																																																																																																																															
성능등급	성능등급																																																																																																																																															
1.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	★★★★																																																																																																																																															
2. 방음벽의 친환경성	★★★★																																																																																																																																															
3. 자재의 친환경성 및 자재가도요의 적합성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																																																																																																																																															
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	★★★★																																																																																																																																															
6.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예방책	★★★★																																																																																																																																															
7. 시공시 방음벽 적용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항목	★★★★																																																																																																																																															
9. 단기간에 비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것 면급	★																																																																																																																																															
10. 생활환경 관련 등급	★																																																																																																																																															
11.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2.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3.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4.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5.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6.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7.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8.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19. 친환경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P-2023-0173-9																																																																																																																																															
건축주 : 에이치엔개발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 공공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3-아-제1-1-0024																																																																																																																																															
건축주명 : 에이치엔개발	평가자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																																																																																																																																															
공급(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가정)	유효기간 : 2023.02.16. ~ 2026.02.16.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외 9필지	사유(인증대상) : 신축(신축)공사																																																																																																																																															
<p>2023년 2월 16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p>2023년 2월 16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p>2023년 2월 16일</p> <p>한국건설에너지연구원 이사장</p>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제5조 제12호 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평가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초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됨.

■ 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 7.2m	지하 2층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 가능) 지하3~4층 : 2.3m 이상(택배차량 진입 불가)	주출입구 : 2.7m 이상 / 부출입구 : 2.7m 이상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해밀씨엠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나로이엔씨	(주)나로이엔씨
감리금액	3,270,026,100	641,206,500	341,220,000	80,08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특한 공동주택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4522023-101-0000100	₩ 219,510,2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임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임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대원에스앤디	에이치엔개발(주)	㈜대원에스앤디	㈜대원	바론피앤에스(주)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용담로 7, 1층(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36번길 40, 318호(논현동, 예성빌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용담로 7, 1층(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1층 (주)대원 (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역삼동, 카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50111-0203905	120111-1151307	150111-0203905	150111-0003058	110111-614807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칸타빌더스위트.com>  
 ■ **분양문의** : 1800-604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칸타빌 더 스위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